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1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김준혁

서미화 · 송옥주 · 백혜련

박홍근 · 김영환 · 전종덕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그결과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여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등).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 및 남성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2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① 특별자치
	<u>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u>
	<u>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u>
	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
	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 및 남
	성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
	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u>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
	<u>항을 준용한다.</u>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제64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와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	
가 부담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24조제1항</u> 및 제25조제1항	2. <u>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u>

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	<u></u> ਨੂੰ
月	
3. <u>제24조제2항</u> 및 제25조제2항	3. <u>제24조제2항</u> , 제24조의2제2
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u> 항</u>
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